

##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계획 심사표

<b>기업현황</b>	<b>사업주</b>	사업자등록번호	
		업태/종목	
		기업규모	<input type="checkbox"/> 우선지원대상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중견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대규모기업
		지원 제외 사업주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감원방지 의무 위반 사업장 <input type="checkbox"/> 임금체불 명단공표 사업장 <input type="checkbox"/> 중대재해 발생 명단공표 사업장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
	고용안정사업 참여이력	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	
<b>사업장</b>	업종		
	피보험자수		

<b>사업계획</b>	<b>일자리함께하기 유형</b> <input type="checkbox"/> 교대제 개편 <input type="checkbox"/> 실근로시간 단축
-------------	--

심사 항목	배점	점수
<b>사업체 현황</b>	30 ※ 법령 위반, 근태관리가능성, 업체규모, 재정건전성, 과거 고용안정사업 참여이력, 근로자이직률 등 사업체 특성에 대한 심사	
<b>사업 내용</b>	40 ※ 제도 도입·시행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,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심사	
<b>고용 창출 계획</b>	30 ※ 신규고용 규모 및 내용,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심사	
<b>가점/감점</b>	±5 ※ 우대요건*, 사업주의 지원금 수급 이력,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취지에 대한 인사담당자의 이해 정도 등 고려 *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3년간 심사점수 5점 가점 - `정부(자치단체 포함)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·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,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'강소기업', '근무혁신 우수기업' - 일터혁신컨설팅 또는 일·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 -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4항에 따른 '국내복귀기업' 으로 선정된 기업 - 「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 각 호(1호 제외)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최소 5일이상 도입하고 '공휴일 유급휴일 전환기업 확인서' 를 받은 기업	
<b>총점</b>	100	
<b>심사평</b>		